

제4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1. 8. 18.(목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홍성규 부위원장
김충식 상임위원
신용섭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의결 가 ~ 의결 나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 제1항 제1호에 의거, 제2009-30차 전원회의(2009. 7. 9), 제2010-1차 전원회의(2010. 1. 14)에서 의결한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'에 해당됨
- 보고 가 ~ 보고 다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1(서면보고)제1항에 따른 '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안건'에 해당됨

2 의결사항

가.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에 관한 건 - (2011-47(서)-158)
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4조제2항에 의거, (주)KT, SKT(주)가 제출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- 주요 내용

< 인가 내용 >

구분	협 정 명	비고
1	KT(시내전화)와 LGU+(이동전화)간 C2P SMS 상호접속협정	신규
2	SKT(이동전화)와 LGU+(인터넷전화)간 C2P SMS 상호접속협정	“
3	SKT(이동전화)와 LGU+(인터넷전화)간 MMS 상호접속협정	“

① KT와 LGU+간 C2P SMS 상호접속협정

- (접속망 구성) 기존 협정('01.3월)에 의해 연결된 상호접속망을 활용하여 C2P SMS를 제공
- (접속료 산정) 접속통화료는 이용사업자인 KT가 제공사업자인 LGU+에게 지급하며, 접속통화요율은 9원/건을 적용기로 양사간 합의

② SKT와 LGU+간 C2P SMS 상호접속협정

- (접속망 구성) 기존 협정('06.3월)에 의해 연결된 상호접속망을 활용하여 C2P SMS를 제공
- (접속료 산정) 접속통화료는 이용사업자인 LGU+가 제공사업자인 SKT에게 지급하며, 접속통화요율은 9원/건을 적용기로 양사간 합의

③ SKT와 LGU+간 MMS 상호접속협정

- (접속망 구성) 기존 협정('06.3월)에 의해 연결된 상호접속망을 활용하여 MMS를 제공
- (접속료 산정) 접속통화료는 이용사업자(발신사업자)가 제공사업자(착신사업자)에게 지급하며, 접속통화요율은 ㉠ 인터넷전화 착신시 9원/건(장문), 56원/건(멀티미디어) ㉡ 이동전화 착신시 15원/건(장문), 89원/건(멀티미디어)을 지급기로 양사간 합의

나.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에 관한 건 - 씨제이이엔엠(주)의 “엑스티엠(XTM)” 등 4개 채널 - (2011-47(서)-159)

○ 「방송법」 제15조(변경허가등)제1항에 의거, 씨제이이엔엠(주)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등록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변경등록하기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< 변경등록 내용 >

① 방송분야 변경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 추가에 따른 변경등록

채널명	방송유형	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엑스티엠(XTM)	텔레비전	방송분야	영화	버라이어티쇼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

② 보조적 데이터방송 추가에 따른 변경등록

채널명	방송유형	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채널시지브이(CH.CGV)	텔레비전	방송분야	영화	영화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
올리브네트웍(O'liveNetwork)	텔레비전	방송분야	식문화·생활정보	식문화·생활정보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
투니버스(Tooniverse)	텔레비전	방송분야	어린이	어린이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

3] 보고사항

가.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- 장애인 방송 관련

○ 방송법 개정('11.7.14)으로 장애인방송 의무화, 장애인방송 제공 사업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 받음

○ 주요내용

① 장애인방송 의무화에 따른 관련조항 수정(제52조 1항)

-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‘방송사업자는 수화·폐쇄자막·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여야 한다’로 수정

② 장애인방송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고시위임 근거 마련 (제52조 제2항 신설)

-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와 장애인방송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

나.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등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- 웹하드 사업자 등록제 관련

○ 웹하드/P2P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통위에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 하도록 「전기통신사업법」이 개정('11.5.19 공포, '11.11.20 시행)됨에 따라 등록요건, 등록절차, 권한의 위임 규정 등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보고 받음

○ 주요내용

①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안

-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신청 절차 등 마련(안 제29조)

- 등록신청시 정관, 법률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사업계획서, 이용자 보호계획서, 납입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함(제2항 신설)
-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접수 후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함(제6항 신설)
- 법률에서 정한 등록요건(기술적 조치계획, 인력 및 물적 시설, 재무건전성,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등)의 세부 내용을 별표로 규정(제8항 신설)

- 권한의 위임규정 (안 제65조제2호의2 신설)

- 웹하드/P2P 사업의 등록 및 등록조건 부과, 변경등록, 폐지명령, 등록취소 등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

- 기 타

- 초기 등록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는 15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(안 부칙 제2조)

②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」 개정안

-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, 등록증 등 별지 서식을 추가

다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

○ 기간통신사업 진입 및 퇴출규제 개선, 통신자원 이용 효율화,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관련 규제 개선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보고 받음

○ 주요내용

① 기간통신사업 진입 및 퇴출규제 개선

- 기간통신사업 진입절차 개선 및 중복심사 완화(안 제6조제3항 신설)

-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도와 주파수 할당제도의 심사시기 불명확 및 중복적 심사절차에 따른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허가신청 시점을 주파수할당 공고 기간 이후로 명확히 하고, 할당심사와 중복된 심사사항은 허가심사 시 생략할 수 있도록 함
 - 기간통신사업 휴·폐지 승인제도 개선(안 제19조제3항, 안 제19조제4항 신설)
 - 현행 ‘공공의 이익’으로 추상적으로 규정된 기간통신사업 휴·폐지 승인 심사기준을 이용자 통보의 적정성, 구비서류 완비,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구체화하고 일정 기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는 직권폐지할 수 있도록 함
 - 경미한 양수·합병 인가심사 간소화(안 제18조제2항 단서 신설)
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미한 양수·합병은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
- ② 통신자원 이용 효율화
-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활성화(안 제63조제2항·제3항 신설, 안 제63조제4항, 안 제63조제5항 신설)
 - 중복투자 방지 및 비용절감을 위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구축 협의를 의무화
 - 전기통신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 근거 마련(안 제2조제14호 신설, 안 제48조제1항, 안 제48조제2항 신설)
 -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 계획을 번호체계·관리·부여·회수·통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법정화
 - 설비제공 현장조사 권한 명확화(안 제35조제5항 신설)
 - 설비제공 관리·감독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고시(「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」)에 규정된 설비제공 및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조사권한을 상향입법
- ③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관련 규제 개선
- 상호접속 등 협정 신고·인가 규제 완화(안 제44조제2항 단서 및 제6항 신설)
 - 사업자 불편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상호접속 등 협정 관련 부속협정의 인가는 신고로 완화하고, 경미한 협정변경은 신고·인가를 면제
 - 사업자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 도입(안 제32조제1항·제2항·제5항, 안 제33조)
 -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 해소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방통위가 그 이행 여부를 평가·공표하는 제도 도입

-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시 과태료 상향(안 제104조제5항 신설)
 -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액수(1천만원 이하)를 ‘공정거래법’ 수준(사업자 2억원 이하, 임원 등 개인 5천만원 이하)으로 상향 조정하여 규제 실효성 제고
-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상한 제한(안 제53조제8항 신설)
 -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의 상한을 과징금 징수채권 소멸시효인 60개월로 제한
- ④ 기타 현행법의 미비사항 정비 등
 - 부가통신사업 신고 면제 확대(안 제22조제1항·제4항, 안 제24조 단서 신설)
 -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(자본금 1억원 미만 등)에는 사업의 양도·양수 및 법인의 합병·상속 시에도 신고를 면제
 -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 근거 마련(안 제92조제4항 신설)
 -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,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
 - 별정통신사업 등록 거부사유 구체화(안 제21조제1항)
 - 등록거부 사유를 등록요건 미비, 구비서류 흠결, 법인이 아닌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, 이외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
 - 사업자에게 변작번호 차단 의무 부과(안 제84조제5항·제6항 및 제100조제3호 신설)
 - 전자금융사기, 스팸메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변작된 전화번호 차단 등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